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9~19p 빨간키	개념,공 설명	I								_				
글신기	20							(1) 과징금	· 처분 및 금	금액 등				
		(1) 과징금	· 처분 및 금	금액 등				구 분 부과권자	al.⊏rlal:	: 위임규정에 따라 소방	규정내용			
		구분			규정내용			차분대상	제조소등의		N.9 AIVII 41 FI			
		부과권자		: 위임규정에 따라 소방/	서장에게 위임			부과요건	제조소등에 1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	거나 그 밖에 공익을	을 해칠	
		처분대상	제조소등의 :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	:거나 그 밖에 공익을	÷	최고금액	2억 원 이하	***				
		부과요건	해칠 우려가					징수절차	행정안전부링	형 : 국고금관리법 시행구	구칙을 준용			
		최고금액 징수절차	2억 원 이하 해정아저부리	형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	1치옥 주요			체납과징금 징수절차	「지방행정제	재·부과금의 징수 등어	l 관한 법률 _에 따라 징수			
		체납과징금 징수절차						과징금		출액 사용정지 일수 0	.0574 수량 배수)에 따른 1일당 3	과징금 금앤 사용정	지 익수	
		과징금 산정기준	저장 또는 취	출액 사용정지 일수 0. 급하는 허가수량(지정4, , 자가난방, 유사목적:	수량 배수) 사용정지 일수			산정기준 감 경		, 자가난방, 유사목적 :				
		감 경	* 사기될 전, 규정내용 없는		1/2 급액									
								(2) 소방관	계법령 과	징금 처분 총정	리			
		(2) 入바겐	J게버려 가	징금 처분 총정	귀					소방관계법	과징금 처분			
		(2) 231	1세합당 파					=1H	-11 21	A 71	취고리버그제	과징금액	감	
				조망관계립	과징금 처분	괴지구기	٦L	지문	대상	요 건	최고처분금액	산정기준	경	
		처분	대상	요 건	최고처분금액	과징금액 산정기준	감 경					1일 평균 매출액		
						1일 평균 매출액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						사용정지 일수 0.0574 저장 또는 취급하는 허가수량 ( 지정수량 배수)에		
		위험물 : 설 <sup>2</sup>	제조소등 치자	영업(사용) 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그 밖에 응절 주 대 있을 점정 저분을 같음	2억 원 이하	지정수량 배수)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 자가난방 , 유사목적 : 1/2 금액	없 음	1	에조소등 기자	사용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 있을 때 사용정지 처분을 같음	2억 원 이하	때는 1 일당 과징금 금액 사용정지 일수 ※ 자가발전 , 자가난방 , 유사목적 : 1/2	건요 이미	
		소방시	설업자		3천만 원 이하	도급( 계약) 금액	1/2				3천만 원	. 172 금액 <del>도급</del> (		
		소방시설	!관리업자		3천만 원 이하	전년도의 연간 매출금액	1/2		설업자		이하 3천만 원	계약)액 전년도의	1/2	
		방염업된	등록업자		3천만 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금액	1/2	_ 소방시설	관리업자		이하	연간 매출액	1/2	
						배돌급액		방염업등	등록업자		3천만 원 이하	전년도 연간 매출액	1/2	



사유

위치	2	2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표 이론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2~22p	개념,공식-설명										
빨간키		(8) 1인의 안전	관리자를 중복	하여 선임할 수	: 있는 경우	등	(8) 1인의 안전	관리자를 중복	하여 선임할 수	있는 경우	등
		위치·거리	제조:	소등 구분	개 수	인적조건	위치·거리	제조	소등 구분	개 수	인적조건
		동일구 내에	보일러, 버너 등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7 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7개 이하	동일인이	동일구 내에	보일러, 버너 등으로서 위험물을 소비하는 장치로 이루어진7 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7개 이하	동일인
		동일구 내에 ( 일반취급소간 보행거리 300m이내)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5개 이하	설치한 경우	동일구 내에 ( 일반취급소간 보행거리 300m이내)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 또는 운반용기에 옮겨 담기 위한5개 이하의 일반취급소	그 일반취급소에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소	5개 이하	설치한 경우
		동일구 내에 있거나	옥외탱	크저장소	30개 이하		동일구 내에 있거나	옥외탱크저장소		30개 이하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목외저장소				상호 보행거리 100미터	옥내	저장소		
		이내의 거리에 있는					이내의 거리에 있는	옥외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		10개 이하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암반탱크저장소					저장소로서 저장소의 규모,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지하탱	크저장소			저장하는 위험물의 종류 등을	지하탱	]크저장소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 (제56조)이	제한없음	동일인이 설치한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 (제56조)이	옥내탱	크저장소	제한없음	동일인 설치한		
		정하는 저장소	간이탱	크저장소		경우	정하는 저장소	간이탱	]크저장소		경우
		다음 각목의 7 이하의 제조소 경우 ·각 제조소등이 상호100미터 ·각 제조소등이 위험물의 최다 미만인 것.다던 그러하지 아니	등을 동일인   동일구 내0  이내의 거리   네서 저장 또는  수량이 지정  난,저장소의 경	이 설치한 에 위치하거나 에 있을 것 = 취급하는 수량의3천배	5개 이하		다음 각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5개 이하의 제조소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각 제조소등이 동일구 내에 위치하거나 상호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것 ·각 제조소등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3천배 미만인 것.다만,저장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개 이하	
		선박주유취급. 공급하기 위한	위험물을 저	l장하는	제한없음				제한없음		
		저장소와 해딩	선막수유취	급소			저장소와 해딩	· 선막수유취	급소		_
				·저 사으			표 이로 오르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9~29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정기점검의 결과보고	검의 내용 · 점검자 및 기록 · 유지 등  경기점검을 한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정기점 정기점검의 제 (법 제18조 제 항)	□    정기정건은 하 제조소등이 과계이은 정건은 하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건결과를			
			수정 사유	표 이론 오	ਟ ਜ			
37~37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⑤ 탱크시	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	⑤ 탱크시	험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			
		구분	자격기준	구분	규정내용			
		검사권자	시·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검사권자	시·도지사,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del>검사</del> 요건	위험물운반자 또는 위험물운송자의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 검사 사항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출입· 검사 사항	·탱크시험자에게 탱크시험자의 등록 또는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음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사무소에 출입하여 업무의 상황·시험기구·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음	위반 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위반시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정 사유	표 이론 오	류로 인한 삭제			
39~39p 제2장 총칙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별표 2)으로 정하는 장소로서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은	05 위험물 저장소 (1) 정의: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별표 2)으로 정하는 장소로서 <mark>허가를 받은 장소</mark>				
			수정 사유	이론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48~48p 번호: 08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암반탱크저장소는 그 저장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예방규정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소방청장은 제조소등 관계인에 대하여 예방규정 이행 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④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 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 탱크에 주입하는 일반취급소는 예방규정의 작성 및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설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1차 250만 원, 2 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암반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과 관계없이 예방규정을	08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제조소등의 예방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암반탱크저장소는 그저장량이 지정수량의 200배 이상인 경우에 한해예방규정을 제출해야 하는 대상에 해당한다.③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시·도지사는 제조소등 관계인에대하여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수있음을 명시하고 있다.④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을제외한다)만을 지정수량의 50배이하로 취급하는일반취급소(제1석유류·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10배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위험물을 차량에 고정된탱크에 주입하는일반취급소는예방규정의 작성및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해설① 제조소등의 관계인 또는 그 종업원이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1차 250만원, 2차 40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암반탱크저장소는 지정수량과 관계없이예방규정을 제출해야하는 대상에해당한다.③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소방청장은 제조소등 관계인의예방규정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평가할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수정 사유	문제 오류
61~61p 제2장 총칙 번호 : 39		39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아조화합물 ② 나이트로화합물 ③ 하이드록실아민 ④ 다이아조화합물	39 다음 중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지정수량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① 아조화합물 ② 나이트로화합물 ③ <mark>질산에스터류</mark> ④ 다이아조화합물
		수정 사유	문제 오류
71~71p 제3장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①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구조 · 설비에 관한 사항	(5) 제조소등 설치허가 신청 시 검토사항(영 제6조 제2항) ③ 다음의 제조소등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고 그 결과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될 것 ⑤ 지정수량의 1천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구조ㆍ설비에 관한 사항 ⑥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위험물탱크의 기초ㆍ기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⑥ 암반탱크저장소: 위험물탱크의 기초ㆍ지반, 탱크 본체 및 소화설비에 관한 사항 ※ 다만, 보수 등을 위한 부분적인 변경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으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는 적합해야 한다.
		수정 사유	이론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u> </u>		수정 후							
74~74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1 간이저장탱	크의 위치ㆍ구조 및 설	비의 기	준	1 간이?	저장탱크9	의 위치 · 구:	조 및 설	비의 기준			
		구분	위치구조및설비의기준			구분	위	치구조및설비의기준					
		설치위치	간이탱크는 옥외에 설치하여야한다. 다	만,전용실안에	설치한경우그렇지않다.	설치	위치 간	간이탱크는옥외에설치하여야한다.다만,전용실인에설치한경우그렇지않다.					
		설치하는탱크수	3이하(동일한품질의위험물의간이저장	탱크를 2이상	설치하지아니해야한다)	설치하는	-탱크수 30	3이하(동일한품질의위험물의간이저장탱크를 2이상설치하지아니해야한다)					
		표지및게시판	"위험물간이탱크저장소"표지,방화에	필요한사항,근	<del>[연구역임을</del> 알리는표지및	표지및	[게/판 <sup>#</sup> 우	"위험물간이탱크저장소" 표지, 방화에 필요한사항,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및 기					
			게시판			탱크의	의고정 움	음직이거나넘어지지아나	·하도록지면	또는기설대에고정시켜야한다.			
		탱크의고정 		움직이거나넘어지지아니하도록지면또는가설대에고정시켜야한다. 				위에설치하는경우에는	-그탱크의주	위에너비 1m이상의공지를둬야한다.			
		보유공지	<del>                                  </del>	l상의공자를둬야한다. 	탱크와전환	3실벽과의 <sup>건</sup>	성용실인에설치하는 경약	₽0,5m이상의	간격을 유지해야한다.				
		탱크와전용실벽과의 간격	전용실안에설치하는경우 0.5m이상이	상의 간격을 유	지해야한다. 	간이저장		00L이하이어야한다.					
		간이저장탱크용량	600L이하이어야한다.		40H7L70A.010R301			- -께32mm이상의강판으 바거나변형되지아니해(		루제작해야하고,10분간70kPa의압력의수압시험시			
		탱크의재질두께및 시험압력	두께32mm이상의강판으로홈이없도록 수압시험시새거나변형되지아니해야현		, 10군간/여왕의 합력의	간이저장탕		음방지하기위한도장		<u> </u>			
		간이저장탱크의외면	녹을 방지하기위한도장을 하여야한다.			고정주유		유취급소의고정주유실	레또는고정급				
		고정주유(급유)설비	주유취급소의고정주유설비또는고정급	유설비의기준	에 적합하여야한다 .								
			A 71 11			0.51							
			수정 사	<del>ĭi</del>		오타							
87~87p 빨간키	문제-본문		작업장 등의 설치기준			(2) 간(	기정비작업	업장 등의 설	설치기준	:			
		구분	도로경계선	도로경계선	고정주유설비	구분		불연재료의담	도로경계선	고정주유설비			
		자동차등의점검·정비 행하는설비	4m이상	2m이상		자동차등의점검정비를 행하는설비			2m이상	4m이상			
		지동차등 설치한경역 세정을			불연재료의 높이 1m이상의 담을설치 담은고정주유설비 4m이상	자동차등 세정을	증기세차기를 설치한경우	높이1m이상설치		·출입구가고정주유설비에면하지않도록할것 담은고정주유설비4m이상			
		행하는 증기세차가 설비 외의 세차기경약	4m이상	2m이상		행하는 설비 	증기세차기와의 세차기경우	4	2m0쌍	4m0상			
			수정 사		표 이론	오류							
87~87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2) 간이정비작	업장 등의 설치기준			(2) 7HJ	정비작업경	장등의 설치기	준				
		구분	도로경계선	도로경계선	고정주유설비		5 . 100	불연재료의담	도로경계선	고정주유설비			
		자동차등의점검정비를 행하는설비	4m이상	2m이상		구분 자동차등	의점검정비를	<u> 동</u> 조세포의림	2m이상	고 ' 양도 ' 파일미 4m이상			
		증기세차가 자동차등 설치한경역 세정을			불연재료의높이 1m이상의 담을설치 담은고정주유설비 4m이상	자동차등           세정을	증기세차기를 설치한경우	높이1m이상설치	510	·출입구가고정주유설비에면하지않도록할것 담은고정주유설비4m이상			
		행하는 증기세차기 설비 외의 세차기경	4m이상	2m이상		행하는 설비	증기세차기외의 세차기경우	4	2m <sup>0</sup> 쌍	4m이상			
			 수정 사	 유		표 이론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91~91p	개념,공식-설명		162	+		10+				
Chapter 03 위험물시설의	/   d, o i	제조소등의 구분	신청시기							
설치 및 변경		지하탱크가 있는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제조소등의 구분	신청시기				
		제조소등 이동탱크저장소	이동탱크를 완공하고		지하탱크가 있는 제조소등	해당 지하탱크를 매설하기 전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이동탱크저장소	이동탱크를 완공하고 상치장소를 확보한 후				
		이송취급소	일부를 완료한 후(다만, 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이송취급소	이송배관 공사의 전체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다만, 지하·하천 등에 매설하는 이송배관의 공사의 경우에는 이송배관을 매설하기 전)				
		전체공사가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원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 을 실시하는 시기 뺸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쩐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전체공사가 완료한 후 완공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경우	원험물설비 또는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시험 또는 내압시험 을 실시하는 시기 暁관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시·도지사, 소방서장 또는 기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 쩐술원이 지정하는 부분의 비파괴시험을 실시하는 시기				
		위 이외의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위 이외의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공사를 완료한 후				
			 수정 사유		   이론 오류					
105~105p Chapter 03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번호 : 13		일반취급소의 위치· 받아야 하는 경우로 ① 위험물취급탱크의 경우(노즐 또는 맨홀 초과하는 경우에 한 ② 펌프설비 또는 1 분의 1 미만인 설비를 ③ 제조소 또는 일반 경우	의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 단의 지름이 200mm를 한다) 일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 를 증설하는 경우 단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일반취급소의 위치·- 받아야 하는 경우로 ① 위험물취급탱크의 경우(노즐 또는 맨홀 초과하는 경우에 한학 ② 펌프설비 또는 1약 분의 1 미만인 설비를 ③ 제조소 또는 일반 경우	노즐 또는 맨홀을 신설하는의 지름이 250mm를 한다) 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5를 증설하는 경우취급소의 위치를 이전하는				
			수정 사유		문제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	·정 전				수정 후						
107~107p	해설													
Chapter 03 위험물시설의		소방관계법과징금	처분					소방관계법과징금	·처분				1	
설치 및 변경 번호 : 16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금	·액 과징금	액산정기준	감 경	처분대상	요건	최고처분	라엑 과징금	액산정기준	감 경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	2억원이	사용정 0,0574 · <b>저장모</b> 허가 지정 일당: <b>사용</b> ※ 자기	는 취급하는 /-랑( /-랑배수) × 1 과정금 금액 정지 일수 발전, 방,유사목적	전화 이미	위험물제조소등 설치자	사용정지가그 이용자에게심한불편을 주거나그밖에공익을 해칠우려있을때 사용정지처분을 갈음	2억원0	사용장 0.0574 '저장의 허가 지정 따른 금액 일수 ※ 가기	E는 취급하는 수량( 수량배수)에 1일당과 <mark>정금</mark> ×사용정지 발전, 방,유시목적	젒 이		
		소방시설업자	갈음	3천만원0	하 도급(겨	[약)금액	1/2	소방시설업자		3천만원(	)하 <mark>도급(</mark>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원0	전년도 마출금	- 1	1/2	소방시설관리업자		3천만원(	전년5 매출 <mark>약</mark>	프 트의 연간 <mark>박</mark>	1/2	
		방염업등록업자		3천만원 0	전년도  하 매출금		1/2	방염업등록업자		3천만원(	전년도 매출인	드의 연간 <mark>박</mark>	1/2	
115~115p 빨간키	개념,공식-설명	3제주소등의 표기	수? 지 · 게시판에 관힌	정 사유 				해설 수정	지 · 게시판에 관한 기	 				
		구분	1 11110100	바탕색	글자색	규격		구분	1 - 11-12-11-22-1	바탕색	글자색	규격		
		물기엄금		청색	백색			물기엄금		청색	백색	117		
		화기엄금, 화기주	<u></u>	<u></u> 적색	백색			화기엄금, 화기주	 주의	적색	백색	규정없음	음	
		위험물제조등을		백색	흑색			 위험물제조등을		백색	흑색		_	
		방화에 관하여 필 게시한 게시판	<u>!</u> 요한사항을	백색	흑색	한변의 길이가		방화에 관하여 필 게시판	일요한사항을 게시한	백색	흑색			
		인화점이 21℃ 미 취급하는 옥외저 및 펌프설비의 거	장탱크의 주입구	백색	흑색	0.3m 이성 다른한변 길이가 0.6	의	인화점이 21° 다 취급하는 옥외자 펌프설비의 게시	장탱크의 주입구 및	백색	흑색	한변의길( 0.3m이 다른한번	상, <u>변</u> 의	
		인화점이 21℃ 미 취급하는 옥외저 및 펌프설비의 주	장탱크의 주입구	백색	적색	이상		인화점이 21° 다 취급하는 옥외자 펌프설비의 주의	장탱크의 주입구 및	백색	적색	길이가0.i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표지	흑색	황색			이동탱크저장소	위험물표지	흑색	황색			
		주유중 엔진정지		황색	흑색	규정없음	2	주유중 엔진정지		황색	흑색	규정없음	음	
		컨테이너 이동탕 허가청의 명칭 및 표기		백색	흑색	가로 0.4r 이상, 세로 0.15 이상		컨테이너 이동탕	선크저장소의 및 완공검시번호 표기	백색	흑색	가로 0.4 이상, 세로 0.15 이상	5m	
		알킬알루미늄등 취급하는 이동저		적색도장	백색문자	물기엄금 화기엄금		알킬알루미늄등 취급하는 이동자	-	적색도장	백색문자	물기엄금 화기엄금		
		해당제조소등이 알리는표지	눈에갈띄게 그림또는문자			작 <u></u>	해당제조소등이금연구역임을 날리는표지			발띄게	그림또는운	자		
			수경	정 사유				표 이론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 전		수정 후
위치 118~118p 빨간키	모류유형 문제-본문	지조함 전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충수·수압 생의 액체위함 기 시	시험 기준 험물탱크의 경우 <sup>시험방법</sup> 용압력임 1.5배의 용압적임시형에서 병하지 하니하는 것 충수시험	다. 그	수정 후 삭제
		간이탱크저장소		세커나 변형하 지 아니하는 것일 것	3.2mm 이상	이로 오른에 따른 사계
			수정	사뉴		이론 오류에 따른 삭제



위치	오류유형		:	수정 전					수정 후		
127~127p 제4강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개념,공식-설명		반한 국가기술: 사 험자위험들 는자로서 안전 험물 안전관리(	자격취득자 물운송자등위험: 1교육(강습·실무)	교육)을 받은	<u>은</u> 자		관한 국가기술: 3시험자위험들 는자로서 <mark>안전</mark> 험물 안전관리	· 자격취득자		
			<u></u>	├정 사유 			이론 오류				
128~128p Plus one	문제-표	1인의 안전관리	자를 중복하0	여 선임할 수 있는	= 경우 등		1인의 안전관리	자를 중복하여	여 선임할 수 있는	: 경우 등	
		위치·거리	제조소	소등 구분	개 수	인적조건	위치·거리	제조	소등 구분	개 수	인적조건
		동일구 내에		고 소에 보기 의 공급하합니다 위치 위치 위치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시	7개 이하	동일인이	동일구 내에	보일러, 등이 한 로서 등이 한 로 서 기가 하는 이 루 아하고 일 반취 급소	고 소에 소에 가지 의로 가지 이 의로 가지 하는 것이 이 의로 가지 하는 것이 있다. 지 않는 것이 있다. 지 않는 것이 있다. 지 않는 것이 되었다. 그 것이 되었다. 그 것이 되었다. 그	7개 이하	동일인이
		동일구 내에 일밥췴금습간 300m 이내)	웍헏붉을	의 반고이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5개 이하	동일인이 설치하 경우	동일구 내에 일밥췲글소간 300㎡ 이내)	의 한 등 기 의 기 의 기 의 기 의 기 의 기 의 기 의 기 의 기 의 기	의 반취 되었다. 일 반취 되었다. 의 반취 되었다. 의 위치 사장	5개 이하	동일이이 설치하 경우
		동일구 내에		크저장소	30개 이하		II.	옥외탱		30개 이하	
		있거나 사항 보행거리 1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강소로서		저장소 기가소	10개 이하		내에 리턴이 는서 나이 라면 이 가장 지나는 리턴이 있는데 는데 한 등에 된다. 그 등에 되었다. 그것 이 이 기자 저 되었다. 이 기자 저 지원이 가지 지원이 나이 하는데	옥내	l거장소	107#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서장소의		저장소  크저장소			거리에 있는    저장소로서    서장소의	아바타	저장소   <b>크저장소</b>	10개	
		#		크지장소				지하택	크지장소  크저장소		
		사이 는미의를 병이 무이 는데하게 되었다. 사이 는미의를 병하는 사이 무슨 사이 무슨 사이 무슨 사이 무슨 사이 무슨 사이		크저장소	제한없음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 (제56초)이	옥내탱		제한없음	동일이이 설치한 경우
		청하는 1   처장조		크저장소		경우   	` '청하는 ' 	간이탱	 !크저장소		경우
		다음 각목의 기이하의 제조소	<u> </u>  준에 몬두 경	적합한 5개			   다음 강동일 기	IL 기준에 모두 3	적합한 5개 이 선 기상		
		(선 세소소등) 상호 100미터 (간 제조소등) 위험물의 최대 미마이 것 다 (그러하지 아니	이내의 거리에서 저장 또는 수량이 지정한다. 가 저장소의 하다.	에 위신함것 에 있을것 = 취급하는 수량의 3천배 경우에는	5개 이하		다음 각목의 기이하의 제조소 이하의 제조소등이 한 제조소등이 시한 제조소등이 위험을 회사다고 하는 다는 그 지조소등이 위험을 하는 다는 그러하지 아니고 생활으로 지조하고 있다.	이 동일구 내어 이내의 거리에서 저장 또는 나이 지장 보다 가장소의 하다.	에 위치하거나 에 있을 것 의 한수 근 취실하는 구량의 3천배 경우에는	5개 이하	
		선발주유청급 성발하기 항략 서창소와 해당	소의 고정주( 위험물을 거 선탁주유취	유설비에   장하는   감소	제한없음		선 <u>박주유</u> 취급 성보증가 취임 서창소와 해당	소의 고정주의 위험물을 자 선박주류취	유설비에 (장하는 급소	제한없음	
			ŕ	├정 사유			표 이론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30~130p 제4장 위험물시설의	개념,공식-설명	[위험·	물안전관	·리자	강습교육	욱이수	가 선	임대성	şt]	[위험	물안전관	리자	강습교육	육이수?	아 선임	[대상]	
안전관리		구분	특수인화물	제1 석유류	알코올류	제2 석유류	제3 석유류	제4 석유류	동식물유류	구분	특수인화물	제1 석유류	알코올류	제2 석유류	제3 석유류	제4 석유류	동식물유류
		제조소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제조소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옥내저장소	5배 이하	5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옥내저장소	5배 이하	5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옥외저장소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옥외저장소	-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옥외탱크저장소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옥외탱크저장소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40배 이하
		옥내탱크저장소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지정		#수와 <sup>:</sup> 임가능	관계없이	옥내탱크저장소	5배 이하	5배 이하	5배 이하	지정		l수와 관 임가능	<u></u>
				수	정 사유	<del>2</del> T				이론 오류							
140~140p Chapter 04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개념,공식-설명	(2) 관계인이 여 ) ① 지정수량으 ② 지정수량으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으 옥내저장소 ④ 지정수량으 옥의탱크저경 ⑤ 암반탱크저 ⑥ 이송취급소 제류유體될록수은회원을 원급하여자원수원이에서 보일라여자원수원이에서 보일라이용서원은 유민의 이용하기를 보 유민의 이용하기를 보 유민의 이용하기를 보 유민의 이용하기를 받는 이용하게를 보 유민의 이용하기를 받는 이용하게를 받 유민의 이용하기를 받는 이용하게를 받 유민의 이용하기를 받는 이용하게를 받 유민의 이용하게 유민의 이용하기를 받는 이용하게를 받 유민의 이용하기를 받는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용하는 이용하	10배(   100바   150바   200바	)   이성   이성   이성	의 위험 는의 위험 는의 위험 는의 위험	물을 : 러물을 러물을	취급하 금 거장 금 거장 금 거장 금 가장	하는	제조소 <del>:</del>	(2) 관계인이 이 ) ① 지정수량의 또는 일반취; ② 지정수량의 옥외저장소 ③ 지정수량의 옥외저장소 ④ 지정수량의 옥외탱크저경 ⑤ 암반탱크지경 ⑥ 이송취급건 제품위법물목은(회원법 보양반대도(이외비는 위법물을) 기울제답는 지원에 교원된 등 의원되었다.	의 10배 ( 글소 의 100배 의 150배 의 200배 당소 서장소 논 전환전로서워함	이상 이상 이상 이상	의 위험 의 위험 의 위험 의 위험	물을 취임을 기업을 기업을 기업을 기업을 기업을 기업을 기업을 기업을 기업을 기업	지상하다 지상하다 지상하다 지상하다 지상하다 지상하다 지상하다 지상하다	<b>는제</b> 하는 하는	<del>조</del> 소
				수 	정 사위	<u> </u>				이론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위치 158~158p Chapter 04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번호 : 18	오류유형	수정 전  18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제조소등에서 흡연장소의 지정기준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흡연장소에는 보유공지를 두고 흡연장소 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② 흡연장소에는 가연성의증기또는 미분이 체류하게나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해야한다. ③ 수동식소화기, 마른모래 또는 소화수 등을 비치하는 등 흡연장소 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위험물을 저장 또서론 158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는 등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로 지정해야 한다.  해설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영 제18조의2) 제조소등 흡연하는 장소를 지정하는 기준・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제조소등에서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흡연장소에는 보유공지를 두고 흡연장소 내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③ 소형수동식소화기(이에 준하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를 1개이상 비치할 것 ④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로 해야한다. 해설
		<ul> <li>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에서 일정한 거리를 이격하는 등 화재 예방상 지장이 없는 위치일 것</li> <li>흡연장소에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하거나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조치를 할 것</li> <li>수동식소화기, 마른모래 또는 소화수 등을 비치하는 등 흡연장소 내 화재를 진화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li> </ul>	흡연장소의 지정기준 등(영 제18조의2)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흡연장소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 화재예방 조치를 해야 한다. 1. 흡연장소는 구획된 실( )로 하되,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실내에 체류하거나 실내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 또는 설비를 갖출 것 2. 소형수동식소화기(이에 준하는 소화설비를 포함한다)를 1개이상 비치할 것
		수정 사유	문제 교체
165~165p 번호 : 35	해설	해설 대리자 자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안전교육(강습·실무교육)을 받은 자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해설 대리자 자격 ·위험물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안전관리자·탱크시험자·위험물운반자·위험물운송자 등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mark>안전교육을 받은 자</mark> ·제조소등의 위험물안전관리업무에 있어서 안전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자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177~177p 제5장 위험물의 운반 등	개념,공식-설명				(7) 위험물운반자 및 위험물운송자의 자격정리.			
660		(7) 위헌묵우	·반자 및 위험물운송》	자이 자격정리	구분 자격기준			
		7. THE E		자격/문			·해당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위험물운송자 (법제21조제1 항)	위험물 운송책임자	·해당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강습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위험물운송자 (법제21조제1 항)	위험물 운송책임자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강습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이동탱크저장소운전자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항상을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mark>위험물운송자</mark> 강습교육과정을 수료할 것	
		위험물운반자(법 제20조 제2항)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위험물운송자 또는 위험물운반자 강습교육과정을 수료할 것	위험물운반	위험물의 취급에 관한 국가기술자격자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병 실시하는 <mark>위험물운반자</mark> 강습교육과정을 수료함		
							정답교육의정을 구표될 것	
		수정 사유			표 이론 오류			
207~207p Chapter 07 보칙	개념,공식-설명	항)	항)		④ 소방청장의 안전교육을 한국소방안전원에 위탁(영 제22조 제1항) ③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에 대한 안전교육			
		○ 안전관디자도 신남된 사에 대한 안전교육 ○ 위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① 원험물운송자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반자로 종사하는 자에	,,,,,,,,,,,,,,,,,,,,,,,,,,,,,,,,,,,,,,,		©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는 자에 대한 안전교육		
		수정 사유			이론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29~229p Chapter 08 벌칙	개념,공식-설명	전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⑦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⑧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30일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⑨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 등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  ⑩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를 기록 ·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⑪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⑫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⑫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를 명령하였음에도 따르지 아니한 자  ⑭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⑤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1)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39조) ① 위험물의 임시저장·취급을 소방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② 제조소등에서 준수해야 하는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③ 제조소등의 허가받은 품명·수량·지정수량배수를 변경신고를 변경일로부터 1일전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④ 제조소등을 승계한 자가 소방서장에게 지위승계신고를 30일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⑤ 제조소등의 용도폐지신고를 14일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또는 제조소등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선임일로부터 14일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⑥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전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⑦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하려는 날 또는 재개하려는 날의 14일전까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⑦ 제조소등의 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를 기간 이내에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⑦ 행크안전성능시험자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30일이내에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자 ⑧ 제조소등의 관계인과 그 종업원 등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 ⑨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⑩ 제조소등의 정기점검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⑪ 제조소등의 전기점검결과 보고서를 30일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⑪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설치를 명령하였음에도 따르지 아니한 자 ⑫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을 위반한 자 ⑪ 위험물의 운송에 관한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239~239p Chapter 08 별칙 번호 : 19	해설	수정 사유  19 해설 ①, ⓒ, ⓒ의 벌칙 양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나, ⓒ의 경우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수정 사유	19 해설 ①, ⓒ, @의 벌칙 양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나, ⓒ의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해설 오류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250~250p Plus one	개념,공식-설명	설명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설치기준 암기 Tip				제조소의 표지 및 게시판의 설치기준 암기 Tip				
		표지등종류	표지(게시)내용	크기	바탕및 글자색상	표지등종류	표지(게시)내용	크기	바탕및 글자색상	
		제조소의 표지판	"위험물제조소" 라는 명칭표시			제조소의 표지판	"위험물제조소" 라는 명칭표시	한변의 길이		
		필요한사항을 게시한게시판	유별 및 품명 ·저강(취급) 최대수량 ·지정수량배수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백색비탕/ 흑색문자	방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게시한 게시판	유별 및 품명 · 저장(취급) 최대수량 · 지정수량 배수 · 안전관리자 성명 또는 직명	0.3m이상 다른한변의 길이가0.6m 이상인 직사각형	백색바탕/ 흑색문자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화기엄금, 화기주의 물기엄금		·적색바탕/ 백색문자 ·청색바탕/ 백색문자	주의사항을 표시한 게시판	·화기엄금, 화기주의 -물기엄금		- 격색바탕/ 백색문자 · 청색바탕/ 백색문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표지	위반시조치사항등 ·건축물또는시설의 크기를 다르게 할수	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및 반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할 것 축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탕색 및 글씨색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백할 것			·표지에는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및 위반 시 조치사항 등을 포함할 것 ·건축물 또는 시설의 규모나 구조에 따라 표지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음 비탕색 및 글씨색 등은 그 내용이 눈에 잘 띄도록 배색할 것			
						※ 설치 위치 : 모든 제조소등의 보기 쉬운 곳에 설치 ※ 제조소의 표지·게시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 : 모든 제조소등에 준용한다.				
						표 이론 오류				
269~269p		(3) 보유공지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위험물을 이송하기 위한 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작물을 제외한다)의 주위에 지정수량 배수와 상관없이 3m 이상의 너비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 내화구조, 50cm 이상 돌출, 개구부 최소, 자동폐쇄식 60분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위험물 취급건축물의 구조 ① 지붕 : 불연재료 ② 창 및 출입구 : 30분방화문·60분방화문 또는 불연재료나 유리로 만든 문 ③ 연소의 우려가 있는 외벽에 두는 출입구 ② 수시로 열수 있는 자동폐쇄식의 60분방화문을 설치 ⑥ 유리를 이용하는 경우 : 망입유리								
			수정 사유			이론 오류에 따른 이론 변경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384~384p	개념,공식-설명					(8) 간이탱크 통기관				
		구분	밸브 없는 통기관	대기밸브부착통기관	구분	밸브 <del>없는</del> 통기관	대기밸브부착통기관			
		통기관은 옥와에설차하다, 그끝부분의 높이는 지상 1.5m이상으로 할것 공통사항 기는는의 구리망등으로 인화방지장치를 설치할것, 다만인화점 70c 이상의 위험물만을 70c 미만의 운도로 저장 또는 워급하는 탱크에 설치하는 통기관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			통기관은 옥외예설치하되,그끝부분의높이는지상 15m이상으로할것 공통시항 가는눈의 구리망등으로인하방지상기를 설치할것, 다만인화점 70c이상의위험물만을 인화점미만의 온도로저장또는취급하는탱크에설치하는통기관에있어서는그렇지않다.					
		개별항목	지름은 25mm이상으로해야한다. 끝부분은 수평면보다 45도이상구부러빗물등의 침투를 막는 구조로해야한다.	5kPa이하의 압력치이로 작동할 수 있어야한다.	개별항목	· 지름은 25mm이상으로해야한다. 끝부분은수평면보다45도이상구부려빗물등의 참투를막는구조로해야한다.	5k9a이하의압력차이로곡동할수있어야한다.			
			수정	사유	표 이동	로 오류				
454~454p (2)		지하자	!을 수 있도록 하고, 다음 각		간이팅	(2) 주유취급소의 고정주유설비 또는 고정급유설비는 <mark>전용탱크 또는 간이탱크 중</mark> 하나의 탱크만으로부터 위험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하고,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수정 사유				이론 오류				
474~474p Plus one	개념,공식-설명	Plus one				Plus one				
		구분	제1종판매취급소	팬쌲급소	구분	제1종판매취급소	<mark>제2종</mark> 판매취급소			
		분류기준	저장취급수량이지정수량20배이하	저장취급수량이지정수량20배초과40배이하	분류기준	저장취급수량이지정수량 20배이하	저장취급수량이지정수량20배초과40배이하			
		설치	건축물의		설치 위치 <b>건축물의 1층</b>		월이층			
		표자· 게(판		연구역임을알리는표지를제조소의기준을 준용하여 해야한다.	표자 제조소의 가준에따라 명칭, 방화에 필요한 시항,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제조소의 가든 세시판 설치해야 한다.					
			수정	사유	오타로	인한 표 일부 수정				
560~560p 번호 : 13	해설	설치하였다면 수원의 총수량은? ① 12.2m <sup>3</sup> ② 13.5m <sup>3</sup> ③ 15.6m <sup>3</sup> ④ 29.1m <sup>3</sup> 해설				13 대형 위험물 저장시설에 옥내소화전 2개와 옥외소화전 1개를 설치하였다면 수원의 총수량은? ① 12. 2m <sup>3</sup> ② 13. 5m <sup>3</sup>				
	1					③ 15. 6m <sup>3</sup> ④ 42. 6m <sup>3</sup>				
						해설 수원의 총량				
		수원의 총량 옥내소화전의 수원 = 소화전의 수(최대 5개) × 7.8m <sup>3</sup> = 2 × 7.8m <sup>3</sup> = 15.6m <sup>3</sup> 옥외소화전의 수원 = 소화전의 수(최대 4개) × 13.5m <sup>3</sup> = 1 ×			옥내소화전의 수원 = 소화전의 수(최대 5개) × 7.8m = 2 × 7.8m = 15.6m <sup>3</sup>					
					옥외소화전의 수원 = 소화전의 수(최대 4개) × 13.5m <sup>3</sup> = 2(수평거리 기준에서 1개 일때는 2개를 설치해야 한다.) ×					
		13.5m <sup>3</sup> = 13.5m <sup>3</sup> ∴ 총 수원의 양 = 15.6 + 13.5 = 29.1m <sup>3</sup>				13. 5m = 27㎡ ∴ 총 수원의 양 = 15. 6 + 27 = 42. 6m <sup>3</sup>				
	[·· 중 구현의 당 = 15.0 + 15.5 = 29.1M <sup>-</sup>   ·· 중 구현의 당 = 15.6 + 27					7 = 42,6m°				
	수정 사유				해설 오류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